

D-162, 2012. 4. 11(수)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금부터 준비하는 선거실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이 자료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등록 및 본선준비를 위한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준비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리서치뷰」가 발간 예정인 「제19대 총선매뉴얼」에 게재할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1. 11. 1(화)

Politics consulting
Research
리서치뷰 **View**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1102호

t 02.786.0409 / 786.2202 f 02.786.2262

www.rsview.kr

목 차

I. 선거운동 개론(概論)

1. 선거운동의 개념 03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60조) 04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06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07

II. 예비후보자

제 1 절 예비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사항 09

- 1) 예비후보자 등록(법 제60조의2) 09
- 2)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0조의3, 제61조) 11
- 3) 선거사무소 설치신고(법 제63조) 11
- 4)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 12
- 5)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치자금법 제34조) 14

제 2 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1)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16
- 2) 명함배부(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17
- 3)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18
-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82조의4~5) 21
-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59조) 22
- 6)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22
- 7) 문자메시지(법 제60조의3, 제82조의4~5, 제109조) 23
- 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109조) 24

제 3 절 예비후보자 분야별 체크리스트

- 1) 선거사무소 개소식 26
- 2) 예비후보자 분야별 체크리스트 27

I. 선거운동 개론(概論)

1. 선거운동의 개념

● 선거운동의 정의 (법 제58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③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법 강좌
- ⑥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정책공약 등을 준비하는 행위
- ⑦ 경선·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위 등

● 선거운동기간 (법 제59조) : 2012. 3. 29(목) ~ 4. 10(화), 13일간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3. 28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②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60조)

가. 예비후보자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지 않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① 예비후보자
- ②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공무원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③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 ④ 예비후보자의 수행원 1명
- 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수행원 1명
- ⑥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나. 예비후보자기간 중 신분별 선거운동방법

신 분 별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	명함,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전화, 문자메시지, 어깨띠, 표지(점퍼·피켓 등), 예비후보자홍보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
배 우 자	예비후보자와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수 행 원	예비후보자 수행원(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배 우 자 수 행 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수행원(1명)은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다. 법정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① 후보자
- ②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중 1인)
-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
- ④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관위에 선임신고 한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함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선임신고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❷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1993. 4. 11일 이후 출생자)

❸ 선거권이 없는 자

❹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 회위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❺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제1항제 2호 내지 제8호)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❻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주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❹부터 ❼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2>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❹부터 ❼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구 분	예비후보자	후 보 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안에 1개소	선거구안에 1개소	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1개소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1개소	
		설치권자 :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의 중앙당	

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구 분		예비후보자	후 보 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지 역 구	국 회 의 원 선 거	선거사무장	1명	1명
		선거연락소장		연락소마다 1명
		회계책임자	1명	1명
		선거사무원	2명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비 례 대 표	국 회 의 원 선 거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	
		선거사무원	시·도수의 2배수 (32명)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활동보조인을 각 1명씩 둘 수 있음

II.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2012.12.13.)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 제출서류

-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 ⇨ 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 (4)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5) 최종학력증명서
- (6)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7)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활동 방법

-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개소식,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제공 등
- (2)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 첩부
- (3)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선임 및 수당·실비 지급
- (4)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5) 세대수 10분의 1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요금별납’ 우편발송
- (6)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7)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에게 1식 1만원 이내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등

○ 유의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은 보전되지는 않지만 법정선거비용제한액에 산입됩니다.

제 1 절 예비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사항

1. 예비후보자 등록(법 제60조의2)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 : 규칙 제50조>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 또는 개소식·현판식·간판게시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1인 3,000원 이하의 다과류(김밥·음료·제과·떡·과일 등)를 제공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1인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주류는 제외>
 - 예비후보자 : 10인 이내
 - 국회의원 : 10인 이내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합하여 10인 이내
- ※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가. 자격요건 및 등록시기

(1) 자격요건

선거일(2012. 4. 11)현재 만 25세(1987. 4. 12. 이전 출생자)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등록시기

선거일전 120일(2011. 12. 13)부터 등록개시

(3) 등록시간 :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등록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나. 등록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다. 등록신청 서류

-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의(나)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함]
- (4)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5) 최종학력증명서
- (6)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 (7)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8) 기탁금 납입 영수증 : 법정기탁금의 100분의 20(300만원)

<등록무효사유 - 법 제60조의2 제2항 및 제5항>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3.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항·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5. 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른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2.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0조의3, 제61조)

가.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나. 사무소 수 : 1개소

다.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직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 3,000원 이하의 다과류(빵·음료·김밥·과일·다과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에 포함되나 보전되지 않음

라. 설치장소 : 해당 국회의원선거구내

(1) 구·시·군청의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그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2)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정당선거사무소와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음

마.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

3. 선거사무소 설치신고(법 제63조)

가. 신고자 : 예비후보자

나.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 없이

다. 신고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라. 신고서식 :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의(가)]

4.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1) 인 원 수

구 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인 원 수	1인	2인
수당·실비(1일 기준)	90,000원 이내	70,000원 이내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회계책임자는 위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2)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시 유의사항

- (1)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봄
- (2)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3) 교체선임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 (4)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시설물 기타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정당의 기관지나 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

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 (1)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 (2)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 없이

- (3)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4) 신고서식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라. 배우자 등의 선임신고

- (1)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 (2) 신고시기 : 선임하고자 하는 때
- (3)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4) 신고인원 : 배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 (5) 신고서식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임신고

- (1)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 (2) 신고시기 : 선임하고자 하는 때
- (3)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4) 신고인원 : 1명
- (5) 신고서식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범위]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신고 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표지 재교부신청

- (1)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 (2) 신고시기 : 표지를 분실한 때
- (3)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4) 신고서식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표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5.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치자금법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 (1) 인원수 : 1인
- (2)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회계책임자 선임 관련 유의사항]

1. 누구든지 2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없음.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으나 그 뜻을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으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따른 규정과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므로 가능한 회계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여 회계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1)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2)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 (3)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4) 신고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5) 첨부서류
 - (가)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사본 1부

※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의 예금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규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용 예금계좌는 '단일계좌'만을 사용하여야 함 ⇨ 수입·지출 겸용으로 1개만 개설하시기 바람(VIP 주거래은행)

(다)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다. 회계책임자 수당·실비

구 분	인 원 수	수당·실비
회계책임자	1인	90,000원 이내/1일 기준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①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포함)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의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선거회계 및 회계보고 등에 따른 규정·절차가 매우 엄격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선거회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시기 바람

제 2 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가. 종 류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및 규격에 제한 없음

나.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소속정당명·전화번호·정견·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예비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주>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규칙 제27조 제3항)

다.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 담장 또는 외벽면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주차타워 등 부속건물에는 설치·게시가 가능함

라.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주> 애드벌룬에 의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으로도 설치·게시할 수 있음

마. 선거사무소 내부 선전물 등 첨부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후보자의 사진·현수막·홍보물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내부에 첨부하는 선전물 등의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2. 명함배부(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가.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법정규격’ 이므로 반드시 준수>

나. 종 수 : 제한 없음

다.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

(1)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정규학력, 전·현직 경력 등

1. 학력은 반드시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취득학위명(학위를 취득한 경우)’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학교명에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외국학력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라. 명함배부 방법

(1) 예비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시장 또는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한 후 교부받은 ‘표지’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명함을 배부해야 하며, 후보자와 독립된 장소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 1인과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1명)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명함 배부는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 투입·가두 살포·자동차 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마. 명함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포함)
2.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지하철역구내”에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개찰구안의 승강장 등은 포함되나,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3.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가. 홍보물 작성

- (1)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2) 종 수 : 1종
- (3)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
- (4)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너비 19cm 이내 / 8면 이내
- (5) 게재내용 : 공직선거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1. 선거구의 개편 등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게 되는 경우 법개정 전에 이미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다른 내용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2. 예비후보자홍보물은 1종으로 제한되나, 우편발송을 위한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특성에 맞도록 후보자 홍보사항을 달리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2010.5.7. 중앙선관위 회답)

나. 게재 사항

구 분	게재하여야 할 사항
앞 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뒷 면	작성근거(“이 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다. 홍보물 발송신고

- (1)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 (2) 신고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3) 신고서식 및 신고할 사항 :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
 -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 홍보물 및 봉투 작성비용
 -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구 분	제 작 내 역					비 고
	인 쇄 사			작성부수	작성비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봉투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시·군·구	발송수량	발송우체국	발송비용
				발송비용 포함

- (4) 발송할 홍보물 2부 제출

라. 홍보물 발송

- (1)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직후부터 2012. 3. 26(선거기간개시일전3일)까지

(2) 발송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

(3) 발송횟수 : 제한 없음

<주1> 발송한 홍보물이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수량만큼 다시 발송할 수 있음. 이 경우 사후 입증에 필요한 반송우편물 봉투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람

<주2> 발송일로부터 2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제출

(4) 발송방법 : ‘홍보물발송용 봉투[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삽입하여 반드시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홍보물투입용 봉투’의 규격은 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함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주1>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로 발송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임. 특히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에 의한 본선경쟁력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과 발송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2>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이 임박한 2012년 4월 6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특별한 대형 이슈나 악재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공보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러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비록 제한된 수량을 한정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이지만 발송타깃을 정교하게 선정·발송한다면 오히려 본선용 선거공보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임

마. 세대주명단 교부신청(법 제60조의3 제3항~제5항)

- (1) 신청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2012. 3. 22(후보자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 (2)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3) 교부신청 :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4) 신청범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세대주의 성명·주소
- (5)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주1> 교부받은 세대주명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주2> 세대주명부를 교부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82조의4~5)

가. 시 기 : 예비후보자등록 직후부터

나. 방 법

- (1)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2) 전자우편에 의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3)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

<주> 선거운동개시일전일(2012. 3. 28)까지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정당·입후보예정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다. 명시하여야 할 사항

-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2)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3)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

(4)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 금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59조)

가. 가능한 시기 : 언제든지 가능

나. 방법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단,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은 반드시 ‘정규학력’을 게재하여야 함

(2)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나 보전대상은 아님

6.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가. 착용 또는 휴대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만 가능

나. 규 격

구 분	규 격
어 깨 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 지 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의 종류 ⇨ 피켓·점퍼·모자·티셔츠·조끼·수기 등>

7. 문자메시지(법 제60조의3, 제82조의4~5, 제109조)

가. 주 체 : 예비후보자

나.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다. 유의사항

- (1)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2)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3)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나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후보자 기간까지 포함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참 고> 자동동보통신의 정의와 수동식 전송

구 분	비 고
자동동보통신 (5회 이내)	▶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 ※ 2이상의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동보통신에 해당됨
수동식전송 (횟수 등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 횟수 등 제한 없음 ①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109조)

가.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

나.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됨

[참고]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 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운동목적이 아닌 단순히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등	○간판·현판·현수막 각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으며, 형광·전광·네온사인 등으로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간판·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 선거 사무원 선임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직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은 정규학력만 게재)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상가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호소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의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전직경력 등 게재 불가) ○상대방과의 인사시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 배부 금지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홍보물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요금별납”으로 우편발송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배부·발송 금지
문자메시지 전화선거운동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5회 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어깨띠 등 표지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등 착용 가능	○착용 또는 휴대할 수 없음
다과류 등	○선거사무소 내방객에 대해 1인 3천원 이하 다과류 제공 가능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1인 1만원 이하 식사류 제공가능(10인 이내)	○다과류나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음

제 3 절 예비후보자 분야별 체크리스트

1.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 시 기 : 선거사무소 설치 이후

나. 장 소 : 선거사무소

다. 초청대상

- (1) 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속당원, 고위 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
- (2) 선거구내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
-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주요인사 등 내빈
- (4) 언론사 기자 등

라. 기타사항

- (1) 현판식
- (2) 개소식 전자우편·보도자료 배포
- (3)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장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
- (4) 행사 종료 후 전자우편·보도자료 배부, 홈페이지 공지 등

<주1> 참석자들에게 1인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은 가능하나 주류 또는 식서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

<주2>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치른 이후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개소식을 반복적으로 개최할 수 없으므로 개소식 일정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주3>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에는 현판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공천이 확정된 후 규모 있게 개소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예비후보자 분야별 체크리스트

가. 총무·행정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비 고
총무·행정	선거사무소 임대 및 세팅	사무기기 및 집기류 등	11~12월
	업무용 차량 렌탈	계약서 체결	11~4월
	공천신청서류 사전 준비	공천신청서, 각종 제출서류	11월중
	예비후보자등록	등록서류 사전 준비	12. 13
	각종 신고서류 작성·제출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12. 13
	선거사무소 개소식, 내부현수막 등	초대장·문자메시지 등	12~3월
	비상연락망 구축·업데이트	업무연락, 기자명단 등	12~3월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개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1. 11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발송일전 2일까지 서면신고	3. 24까지
	후보자등록서류 등 제출서류 사전 준비	선거연락소 관련 사항 등	3. 26까지
	선전물첨부차량 렌탈	후보자마다 5대	3. 28까지
	콜센터 CTI시스템/부스 등 설치	임시전화 20~50회선	3. 28까지
회 계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예산(안) 편성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준수	10~11월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선거회계 유경험자 선정	12. 13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리	계약서·영수증 등 징구	12~4월
후 원 회	후원회사무소 설치준비	관할 선거구내에 1개소	11월중
	후원회 대표자 선임 등 등록 준비	후원회 정관 등	11월중
	회계책임자·유급사무직원(2명) 선정	후원회 예금계좌 신규 개설	11월중
	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후원회 임원선출, 정관 등	11월중
	후원회사무소 외벽 간판 첨부	전광·형광 간판도 가능	12. 13
	후원회안내장·신문광고 기획·제작	후원회안내장 : 3,000매	12~4월

나. 홍보기획 · 메시지 · 연설문

구 분	핵심과제	참고사항	비고
홍보기획	선거구 지표조사, 벤치마크 조사	이슈 조사, FGI 등	10~11월
	SWOT분석, PI기획, 캠페인 전략수립	홍보매뉴얼 제작	10~12월
	스튜디오 사진촬영	현장스케치	10~12월
	각종 선전물 기획·제작	선거사무소 내부용	12. 13부터
	간판·현판·현수막 기획·디자인	사무소 외벽 첩부용	12. 13부터
	예비후보자 명함·표지물 등 제작	표지물 : 어깨띠, 점퍼 등	12~3월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개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1. 11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세대수의 1/10 이내	3. 26까지
	경선훈보물·명함·피켓 등 제작	경선을 실시할 경우	2~3월
	법정홍보물 등 기획·디자인·제작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3월중
	어깨띠·모자·티셔츠 등 소품 제작	디자인의 통일성 고려	3. 26까지
	읍·면·동 현수막 기획·디자인	첩부장소 선정 및 점검	3. 29첩부
구전홍보 전화홍보	구전홍보논리·메시지 기획, 전파	여론주도층(커넥터) 조직화	12~4월
	당원(자원봉사자) 매뉴얼 제작·교육	지역위원회 등 공조	3.11까지
	콜센터 CTI설치, TM요원 선정·교육	CTI : 15~50회선	3. 28까지
유세차량	유세차량 기획·디자인 및 제작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차종	3. 28까지
	영상홍보물 기획·제작	종합본·요약본 등 2~3종	3. 28까지
	로고송·당가 등 기획·제작	따라 부르기 쉬운 3~5곡	3. 28까지
	연설원·사회자 사전 섭외·리허설	누구나 연설·대답 가능	3. 28까지
	유세팀 편성, 유세일정 기획 등	팀장·선발대·운전자 등	3. 28까지
	울동팀 편성 및 리허설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	3. 28까지
광 고	인터넷광고 기획·디자인	예산을 감안해 매체 선정	3. 28까지
연설·대답	방송연설 원고작성, 리허설	텔레비전·라디오 각2회	3. 28까지
	각종 대담·토론회용 원고작성	스튜디오 실전 리허설 필수	3. 28까지
	거리연설용 원고작성	1분·3분·5분 등	3. 28까지
기 타	전자우편·보도자료 등	예비후보자등록 직후부터	계 속
	후원회사사무소 외벽 간판	후보자홍보사항 게재불가	12. 13부터
	후원회 안내장 및 신문광고 등 기획	신문광고 : 분기별 4회	12. 13부터